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784
----------	-----

2024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홍국표 의원(찬성자 43명)

나. 발의일 : 2023년 5월 30일

다. 회부일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국표 의원)

#### 가. 제안이유

- 2022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반려견 순찰대’ 시범사업은 반려견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치안정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의 효과를 인정받아 2023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반려견 순찰대 활동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2023.6.8. ~ 6.12.)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민참여형 치안정책사업인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반려견 순찰대 활동,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조 문 체 계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li></ul>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반려견 순찰대’를 정의</li></ul>
제3조(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반려견 순찰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노력</li></ul>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반려견 순찰대 활동 나열 및 반려견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 위하여 노력</li></ul>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반려견 순찰대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li></ul>
제6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반려견 순찰대 활동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li></ul>
제7조(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 위해 자치구,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li></ul>
제8조(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함</li></ul>
부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포일부터 시행</li></ul>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한 이후 “안전한 서울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제1호 사업으로, 2022년 5월 강동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음.

“반려견 순찰대”는 최근 팻팸족(Pet + Family)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 활동에 방범 순찰의 임무를 접목하여 주민참여 치안 및 지역의 방범력 향상 기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시범 운영 중 언론과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2022년 7월 말부터 8개 자치구(송파, 서초, 강서, 금천, 마포, 서대문, 동대문, 성동)에서도 확대 실시하였고, 2023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음.

## □ 2022년 반려견 순찰대 9개 자치구 운영 현황

- '22.5월 강동구 시범 운영, 8월 총 9개 자치구(284팀) 확대 운영

4월	5월	6월	8월	12월
업무 협약	시범 운영	강동구 총 64팀 운영 112신고 8건 120신고 120건	확대 운영	강동, 송파, 서초 금천, 강서, 마포 서대문, 동대문, 성동 총 284팀 운영 112신고 206건 120신고 1,500건
				12. 31. 기준 활동일자 총 9,045건

※ 112신고 : 비행청소년 우범지역, 주취자 보호조치, 교통 위험 등  
120신고 : 보안등 고장, 도로 안전시설물 파손 등 생활안전 불편사항

## □ 2024년 반려견 순찰대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
- 선발팀수 : 총 2,000팀 내외(24년 1,000팀 선발 예정)
- 추진방법 : 반려견 교육 등 민간 전문업체 선정 운영
  - ※ 운영업체 선정(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계획 별도 수립 시행 (2월중)
- 소요예산 : 301,192천원 (전액 시비)
- 추진체계 : 자치경찰위원회-경찰서-자치구-민간 거버넌스 구축

※ 자치경찰위원회, 「'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 계획」, 2024.1. 자료 참조.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고 함)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는 2023년 25개 자치구에서 719개 순찰팀이 선발되어 범죄예방 신고(112) 317건, 생활 안전 신고(120) 2,187건, 42,585건의 활동일지 작성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 및 생활안전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2023년 1월 성동구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중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통해 큰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예방, 1) 5월 강동구에서는 순찰 중 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 발견하고 신고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되는 등2) “반려견 순찰대” 활동 미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

### 〈 2023년 반려견 순찰대 지원 및 선발 현황 〉

자치구	지 원	선 발	자치구	지 원	선 발
종로구	40	25	마포구	77	42(36)
중 구	21	6	양천구	64	28
용산구	28	12	강서구	67	29(18)
성동구	47	17(19)	구로구	42	18
광진구	46	17	금천구	41	13(6)
동대문구	79	22(25)	영등포구	54	32
중랑구	74	18	동작구	37	15
성북구	34	12	관악구	35	13
강북구	17	6	서초구	51	14(26)
도봉구	17	5	강남구	112	36
노원구	41	20	송파구	73	32(19)
은평구	67	42	강동구	94	33(34)
서대문구	48	15(14)	합 계	1,306	522(197) 총 719

※ ( )는 작년 활동 후 재 신청자 선발 현황임.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요청자료(2023년 6월 5일 제출, 반려견주 기준으로 작성)

1) 채널A, “스쿨존 만취 운전 잡은 ‘반려견 순찰대’”, 2023년 1월 12일자 등.

2) 뉴시스, “서울 반려견 순찰대, 실종 지적장애인 발견 가족 품으로”, 2023년 5월 14일자 등.

## 〈 2024년 반려견 순찰대 지원 및 선발 현황 〉

자치구	지 원	선 발	자치구	지 원	선 발
종로구	9	8(32)	마포구	27	20(85)
중 구	8	7(10)	양천구	18	15(41)
용산구	13	8(15)	강서구	30	27(67)
성동구	14	9(37)	구로구	36	26(23)
광진구	30	19(27)	금천구	15	9(29)
동대문구	13	5(51)	영등포구	42	32(47)
중랑구	20	14(24)	동작구	28	19(23)
성북구	42	30(24)	관악구	29	21(33)
강북구	33	25(15)	서초구	22	14(52)
도봉구	15	12(21)	강남구	14	11(50)
노원구	34	28(35)	송파구	37	31(65)
은평구	19	14(46)	강동구	83	55(73)
서대문구	12	8(32)	합 계	643	467(957) 총 1,424

※ ( )는 작년 활동 후 재 신청자 선발 현황임.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요청자료(2024년 6월 11일 제출, 반려견주 기준으로 작성)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의 위탁, 자격의 취소, 포상 관련 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 수정가결 〉

- 당초 의원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업무상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관 성격을 감안하여 “지원” 조례로 발의
- 의원 발의(안)에 대해 부서(안)을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였으나, ① 사업의 위탁, ② 자격의 취소, ③ 포상 관련 조항은 “운영” 부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누락 발의
- 특히, “포상” 관련 조항은 반려견 순찰대 우수 활동자 표창 수여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항임.

## 나. 세부내용 검토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반려견 순찰대”를 정의하고 있음.  
안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본 제정조례안이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음.

※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목적 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여야 함(법제처, 『2022년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년 12월, 54면 참조).

####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안 제2조 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려견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반려견 순찰대”를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법 활동을 접목한 순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시장의 책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 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

###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안 〉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시장의 책무에 관한 문구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b>제3조(시장의 책무)</b>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b>제3조(시장의 책무)</b>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3) 반려견 순찰대 활동 및 연계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안 제4조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①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②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③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로써 “반려견 순찰대”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이와 더불어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통해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점도 의미 있다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안 〉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흥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반려견 순찰대” 활동 중 위험한 범죄 상황을 발견할 경우 “반려견 순찰대”의 개입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바, 사전에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순찰대 활동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5조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 반려견 순찰대 연계 활동

- 지역주민과 함께 청소년 비행·학교폭력 우범지역 등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연계 활동
  - 학교폭력 우범지역 범죄예방 캠페인, 협동 순찰 등 SPO 연계 다양한 청소년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물매개치유’ 프로그램 연계 경로당·공동생활가정 등 사회적 약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sup>3)</sup> 운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노인학대 모니터링 요원, 공동체생활가정 보호아동의 정서 지원을 통한 건전한 육성의 기회 마련 등 연계 활동 가능
- 상황적 범죄예방과 지역공동체 범죄예방의 병합을 통해 범죄예방력 향상
  - 자치구별 1세대 셉테드 사업 추진시 순찰대 참여, 범죄 취약지 등 의견 개진
  - 2세대 셉테드인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적 관점에서 반려견 순찰대의 다양한 참여자 특히 MZ세대 등 젊은층의 참여를 활용 지역사회 관심과 소통을 유도
- 범죄예방 등 관련 자치구 소관 안전·위험 시설물 등 예방순찰 활동
  - CCTV·보안등·교통·방범 시설물·공사장 안전 미조치로 통학로 등 교통사고 위험 상황 등 자치구 소관 안전·위험 요소 방지를 위한 활동
- 태풍·폭우 등 재난 위험 요소 발견 등 선제적 안전 예방 활동
  - 배수로 역류·모래방재함 점검·보이는 소화기·공사장 낙하 위험물 등 점검

※ 자치경찰위원회, 「'23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 계획」, 2023.2. 자료 참조.

3) 송파구 공동생활가정 연계 ‘내일 같이(가치) 동행’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22.11.)

#### 4) 반려견 순찰대 활동 지원(안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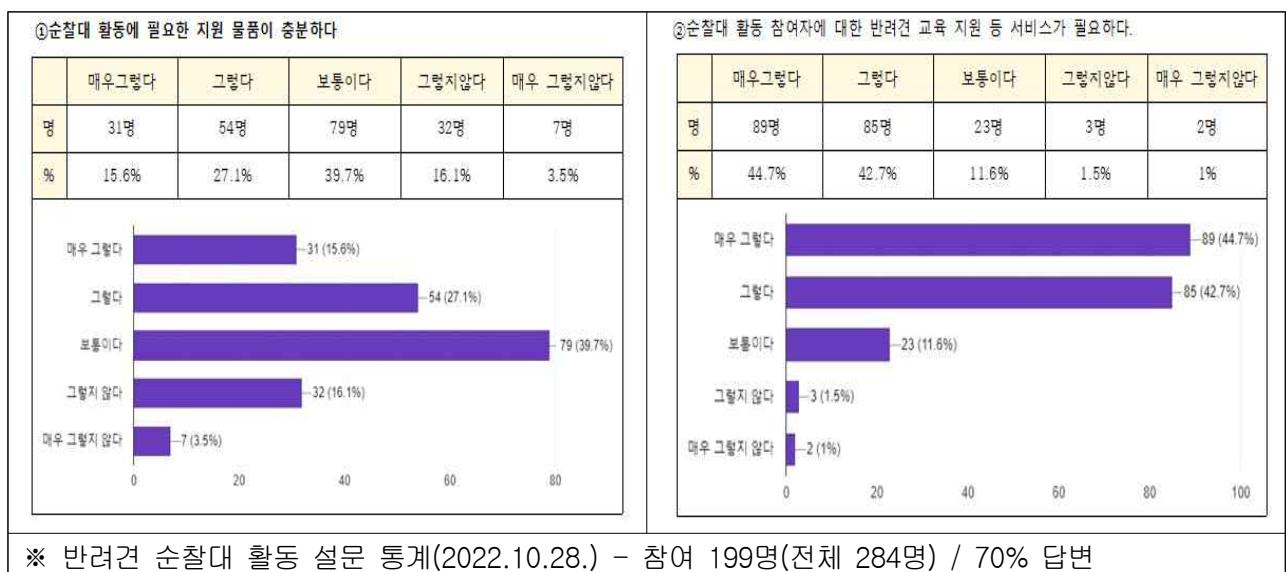
- 안 제6조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려견 순찰대”的 활동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안 〉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설문 통계(2022년 10월 28일)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 활동 물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9.3%, 순찰대 활동 참여자에 대한 반려견 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4%로, 지속적인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5)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25개 자치구, 경찰서,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만 성공적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이 가능한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안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다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문구의 명확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u>구축할 수 있다.</u>	< 제1안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u>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제2안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u>구축하여야 한다.</u>

## 6) 민간위탁 및 포상 규정 신설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단체·개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현재 “반려견 순찰대” 선발 및 교육은 반려견 전문 훈련사(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적 평가 진행이 필요하고,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몇 개월의 공백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바,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임.
  - ※ “반려견 순찰대” 선발 및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실습 심사로 진행되며, 1차 서류 심사는 지원동기, 원활한 활동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고, 2차 실습 심사는 반려견 전문 훈련사(경력 10년이상) 전문적 평가 진행으로 리드워킹(따라걷기), 보호자 명령이행, 외부자극, 대인대견 반응 등 심사를 거침.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지역사회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및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의 신설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을 것임.
  - ※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을 ‘포상(褒賞)’이라 하고, 성적에 대한 표창을 ‘시상(施賞)’이라 함(「정부 표창 규정」 제3조 참조).
  - ※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원에 대한 포상으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의 수여를 위하여는 조례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84
----------	-----

발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의자: 홍국표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석, 박영한,  
박춘선,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이효원, 임준대,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황유정,  
황철규 의원(43명)

## 1. 제안이유

- 2022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반려견 순찰대’ 시범사업은 반려견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의 효과를 인정받아 2023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